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 지역특화 협약보증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의 규정 및 「대전광역시 지역특화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의거, 2025년도 하반기 지역특화 협약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대전광역시장

1. 지원규모 : 600억 원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별첨1 지원 가능 업종”에 해당하면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아 래 -

- 벤처기업 ○ 창업기업 ○ 대전시 유망중소기업 ○ 대전시 매출의 탑 수상기업
- 2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 뿌리기업 ○ 수출기업 ○ 대전시 좋은일터 인증기업
- 경영혁신형 인증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대전지역 스타기업 ○ 대전시 전입기업(3년 이내) ○ 대전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 D-유니콘 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대전시 지정 산단입주기업
- 녹색인증기업 ○ 대전시 실증지원 사업 참여기업(3년이내)

3. 지원한도

- 3억 원 범위 내(전년도 매출액의 50%이내)

※ 창업기업은 매출액 한도 미적용, 신용보증기금 보증금액 전액 지원 (한도 3억원)

※ 1억 원 이하 대출은 취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억 원 이상 대출을 권장하며, 신용보증기금 평가 및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정해짐

4. 지원조건

가. 이차보전 기간 : 2년

나. 이차보전 요율 : 2%

다. 용자금리 : 자율금리(기업과 우리은행 또는 하나은행 간의 약정금리)

라. 용자실행 :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마. 대출은행 : 시와 협약한 2개 은행(우리은행 및 하나은행)

바. 보증기관 :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금 (별첨2 참조)

※ 해당 사업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한 대출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두 가지 보증 형태 중 선택하여 보증받을 수 있음

① 특별출연 협약보증(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보증료 0.2%p 차감)

②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최초 2년간 보증료 0.5%p 지원)

5. 지원 제외업체

가. 용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여신운용세척’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 출자자인 업체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바.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 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사.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당해연도 지원결정잔액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아. 용자금 조기상환 기업,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자.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뒷장 참조)

차.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이 마이너스(자본잠식)인 업체

카. 신청일 현재 지방세,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완납 후 신청 가능)

6. 신청 및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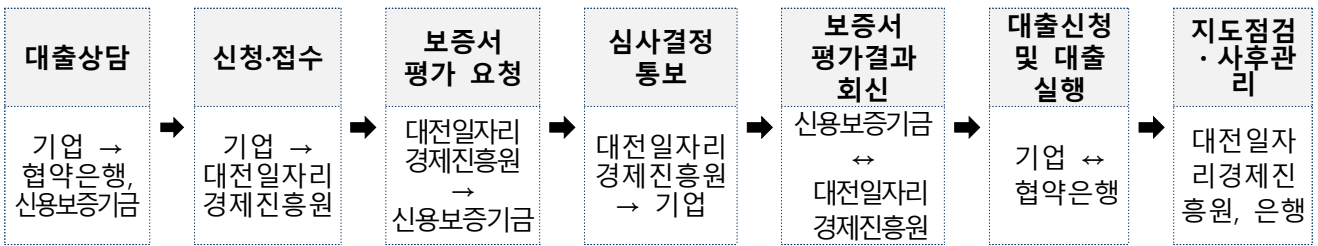
가. 접수기간 : 2025. 7. 4. ~ 12. 31.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 『대전비즈』 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 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다. 용자대상자 결정: 적격검토 후 지원 결정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라. 지원절차



마. 신청 구비서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별첨 3 참조]

구분	제출서류	비고(해당업종)
공통 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2개이상 기업 - 부가가치세신고서(도장날인) 제출
	전년도 재무제표(홈텍스)	※ 24년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신고서(도장날인) - 부가가치세신고서: 업종 2개이상 기업인 경우 제출
	추정재무제표(회계사 & 세무사)	대상: 업력 1년 미만 기업 제출 용 ※ 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 발생 확인분
	정보활용제공동의서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정부24 → 민원신청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
	법인 주주명부 (법인의 경우 제출)	※ 국세청 홈텍스 및 회계사무소 발급
신용보증신청서 1부	별첨 3	
대상 확인 서류	2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대전시 전입기업, 대전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D-유니콘기업,	관련 확인자료
	대전시 유망중소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좋은 일터 인증기업, 대전지역 스타기업,	지정서(인증서) 사본
	벤처기업, 창업기업(7년이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뿌리기업, 수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녹색인증기업, 대전시 실증 참여기업	수출실적증명서, 관련 인증 확인서 및 창업기업확인서 사본
업종별 증빙 서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사업등록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법인택시 운송사업 등록증	일반화물·법인전세버스·법인택시운송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1부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1부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1부	소방시설공사업	

※ 상기 서류는 대전시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천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우리은행, 하나은행 및 신용보증기금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등을 사전 협의할 경우 편리할 수 있음
- 동 자금은 기 대출 상환용도로는 사용 불가

7. 사후관리

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나.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액 환수 및 향후 추천 제약

(향후 1년간 추천 제약)

- ▶ 기한 내에 추천서를 미실행한 경우
- ▶ 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이 변동된 경우
- ▶ 사업보고서 제출 미이행 및 사후관리 협조 불이행

(향후 3년간 추천 제약)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 ▶ 신청·지원 목적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 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
- ▶ 기타 부당 사용
- ▶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유의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승인 후 1개월 연장가능)

※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효력 상실

※ 대출 취급 기한 중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공문을 통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

다.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라.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전액 환수 조치

9. 상담 및 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 3021, 3000)
- 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 1588-6565)

별첨 1	지원 가능 업종
-------------	-----------------

구 분	세부지원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1차)	비 고
제조업	①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10~34) ②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③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인증 기업	전업을 30% 이상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381), 폐기물 처리업(382) ②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도로화물 운송업(49301), 화물운송 주선업(52992) 법인택시 운송업(49231), 법인 전세버스 운송업(49232) ③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 보관 및 창고업(5210), 화물 취급업(5294) ④ 정보 서비스업(63) ⑤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⑥ 전문 디자인업(732) ⑦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7631),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 건설장비 운영업(4530)	전업을 50% 이상
건설업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 ②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③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④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지식산업	①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582) ② 연구개발업(70) ③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영상산업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5911)	
중소기업 협동조합	○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업종/ 여행사업(7521) ※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 여행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 단, 가계 유지 목적 대상 업종의 생활밀접 업종(도.소매, 음식·숙박, 서비스 등에 속하는 업종)제외

사 업 계 획 서

○ 사업기간 :

○ 사업개요

- 회사소개 :

- 생산품목 :

- 자금소요시기 :

○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구분	소요 금액
재 료 비	백만원
인 건 비	백만원
일반관리비	백만원
기 타	백만원
계	0백만원

○ 융자금 상환계획 :

○ 기 타 :

※ 작성요령 : 융자금상환계획에 대한 소진계획과 상환방법(일시상환)을 간략히 기록

별첨 5**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및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서**

【정보제공 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및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서

□ 목적

- ① 대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접수·심사·추천) 및 사후관리(이차보전지원,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와 기업지원 시책 홍보, 통계조사의 목적으로 활용
- ②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③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휴대전화, 생년월일, 성별),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서·직책·휴대전화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대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대전시, 시의회,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기관(자금지원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기관), 협약은행 및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에 한하여 제공 이용

□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